



패널
토의

정치학적 견지에서

朴 東 緒 박사

<서운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看護員이라고 하는 特定職種의 人力進出을 政治行政面에서 檄ト하려는 경우 첫째로 밝혀야 할 것은 여기서 試하는 政治, 行政의 뜻인 것이다.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私益과 國益을 效率의 으로 구현하려는 것을 그의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檄토하려고 한다.

1. 利益의 増進

私益과 國益의 증진이 되는 것 보다 損失을 초래하는 면이 크지 않느냐 하는 反論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근거로 막대한 돈을 投入하여 人力形成을 했는데 外國에 가서 봉사케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 문제의 정확한 解明은 이들이 海外에 나가기 까지 投入된 돈, 出國後에 送金한 돈, 歸國率 그外에 눈에 보이지 않는 公, 私益의 증진을 數字로 계산하기 전에는 正答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리의 立場에서는 이들이 가급적 出國後 많이 벌고 歸國率이 높고 韓國文化의 소개등을 통한 國威선양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과 이들의 出國後 계속 이를 補完하기 위한 人力을 形

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多幸히도 우리의 경우 처럼 傳統的으로 배움의 의욕이 강한 民族도 世界的으로 도출되 또한 人的資源이 풍부한 나라도 드문 것 같다.

따라서 이를 補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여기서 버는 것의 몇倍(4,5倍)收入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가 생각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公私益의 증진을 수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檄토하면 다음과 같다.

(1) 높은 收入을 통한 私益의 증진 및 이를 한국에 送金하는 경우 가득풀이 아주 높은 外貨획득을 들 수 있으며

(2) 問題는 있지만 個個人의 外國에 나가려는 강한 욕망 충족, 이를 통한 文化接觸을 통한 習得(社會, 文化, 技術)

(3)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文化紹介, 잘하면 國威선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끝으로 애국 애족심의 강화를 들 수 있겠다.一般的으로 國內에 있을 때 보다 外國에 나가면 自然發生의 으로 애국 애족의 마음이 울어나온다고 볼 수 있겠다.

2. 效率化方案

상술한 利點이 自動的으로 간호원의 人力進出自體에서 탄생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利點을 잘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對策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우선 이미 진출된 人力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급적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의 成分, 收入, 送金額, 귀국率, 귀국후의 적응, 그곳에서의 行態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전술한 目的, 利益에 비추어 作成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조사가 끝나면 이에 따른 人力進出과 形成計劃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단기적인 것에 그칠 수는 없을 것이다.

(3) 出國節次上의 간소화, 비용의 감소, 친절성, 소요시간이라고 하는 면에서 시정될 것은 없는지, 가득률이 20% 内外밖에 안되는 加工業者에게는 막대한 補助, 支援을 多方面에서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가득률이 엄청나게 높은 이들에게는 어떠한 도움을 政府가 주고 있는지 평가해 볼만한 것이다.

(4) 出國 前에 外國生活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기대, 동경을 갖는 것을 삼가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한 허황된 꿈, 기대는 反對로 큰 실망을 수반하기 쉽기 때문이다.

(5) 간호원의 資格檢定은 얼마나 妥當度, 信賴度가 높은 것인지, 學歷面에서 과잉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서 그가 기대하는 일에 훨씬 못 미치는 일을 함으로서 엄청난 士氣低下, 失望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年齡과 始期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이러한 일은 그간의 업적 새로이 실시할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資料에 따라 資格要件의 再檢이 계속 있어야 할 것 같다.

(6) 특히 西歐, 西獨, 伯林으로 가는 경우의 思想問題에 대한 配慮인 것이다. 出國前의 교육 내용을 단순히 國民校生에 대한 것과 같이 선전적인 성격의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政治理念의 長短點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外國에서의 한국의 평가상의 문제. 특색, 이의 원인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不美한 보도에 사전 대비시키는 것이다.

(7) 勸勞監督官을 통한 行政指導를 들 수 있다.

一般的으로 海外公館員과 한국住民間의 關係가 友好的인 것이 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유학생도 아니고 女性들임으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8) 끝으로 이들의 귀국을 조장하고 귀국후의 직장, 收入의 低下, 文化의 變化, 기대의 充足不足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일을 도우는 직업 안정의 일부를 누군가가 統合의으로 擔當해야 할 것 같다.

